

강원도립대학교 구성원 참여와 소통에 관한 규정

(제정) 2017-10-16 규정 제48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의 대학 구성원 및 지역주민이 참여와 소통을 통한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구성원’이라 함은 총장, 교수, 학생, 직원 등 대학의 내부 구성원 전체를 말한다.
2. ‘지역사회’라 함은 강원도 및 대학 소재지인 강릉시의 지역주민과 대학총동문회 및 번영회 등 지역의 각종 사회단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제3조(참여주체)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의 참여주체는 모든 구성원으로 한다. 다만 구성원의 대표권을 행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추천 절차에 따라 총장이 위촉한다.

1. 교수 : 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교수회에서 추천한다.
2. 직원 : 대학의 직원 중에서 직원단체에서 추천한다.
3. 학생 : 대학의 재학생 중에서 강원도립대학교학생회에서 추천한다.
4. 지역주민 : 외부인사(동문, 학부모, 지역인사) 중에서 강원도립대학교총동창회에서 추천한다.

제4조(책무) ① 강원도립대학교 총장(이하“총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강원도립대학교의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참여와 소통의 범위) 조직구성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요 의사결정 : 강원도립대학교 각종 위원회 운영 등 참여
2. 단순 합의소통 : 워크숍, 세미나, 연찬회, 간담회, 회의, SNS, 홈페이지, 앱 등 참여

제7조(합의과정) 대학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의 합의과정은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1. 주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운영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2. 단순 합의소통이 필요한 사항은 사전 의견수렴(설문조사 등)이나 간담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의사결정) 대학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의 의사결정은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주요 의사결정은 구성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 제적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2. 단순 합의 소통의 결정은 구성원과 원활한 합의하에 결정한다.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총장은 다음 연도의 참여와 소통에 관한 기본운영 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의견수렴 및 환류·개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수립·운영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 부서는‘별표 1’과 같다.

부 칙(2017. 10.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운영되어 온 관련 대학구성원 간 참여 및 소통에 관련된 강원도립대학교 규정들은 이 규정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구성원 및 지역사회	담당부서
1. 주요 의사결정 - 대학 규정에서 정한 각종위원회 운영 2. 단순 합의·소통 ① 총장, 교수, 학생 간의 참여·소통 ② 직원간의 참여·소통 ③ 지역주민 간의 참여·소통	전 부서 교학처 사무국 기획홍보처